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 -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노4472 공갈, 공갈미수
피 고 인	A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형우(기소), 하경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창교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0. 30. 선고 2024고단980 판결 및 2024초기580, 2024초기593 각 배상명령신청
판 결 선 고	2025. 8. 26.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



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2,000,000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위하여 3,000,000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2,000,000원의 벌금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의 행동은 단순히 재산을 갈취하는 것에서 나아가 형사 사법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나아가 검사가 당심에서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피고인이 들고 있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일부 부인하였던 부분도 번의하여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 및 당심에서 현출된 제반 양형조건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22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열 _____

 판사 이은정 _____

 판사 김양호 _____